

**2025년 흥천군청소년수련관
실무자 공개채용 2차 재공고**

흥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실무자를 공개채용 공고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꿈을 함께 만들어갈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있는 유능한 아동청소년지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18일

흥천군청소년수련관

I . 채용분야

현재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또한 졸업예정자의 경우 취업 일시 및 근무시작은 계약서 작성 시 개별면담을 통해 조정 합니다.

부서	직종	직위	인원	직무	기타	자격조건(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계약직	담임	1명	청소년활동 기획 및 진행	육아휴직 대체인력 (15개월)	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④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⑤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II . 근무조건

가. 신 분 : 흥천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 직원

[육아휴직대체인력 15개월 계약직]

나. 보 수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기준 (*채용확정자 계약시 상세안내)

다. 후생복지 : 국가 5대보험 ‘고용, 건강, 산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퇴직 연금 가입

라. 근무시간 :

채용분야	직무내용 및 근무시간
흥천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1명) [육아휴직대체자 (15개월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활동 기획 및 진행, 청소년 상담 및 생활기록 관리 - 기타 일반 사무업무 등 ▪ 주40시간근무 (근무형태에 따라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요일 근무 12:00~21:00(휴게시간 포함) / 주말체험 월1회 이상 ▪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15개월 근무)

Ⅲ.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라. 자격 및 경력(서류심사전일 기준) :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자
-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자
-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자
- ④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 ⑤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분야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9의2.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 「아동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2의1.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2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 「경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각 응시별 계약 기간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면접 시 설명함.

*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15개월 근무자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근무)

IV. 전형방법

- 가. 1차 : 서류전형 2025년 3월 26일(수) 6시까지
나. 2차 : 면접심사(1차 전형 통과자에게 개별 통보)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10시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발표

V. 공고 및 원서접수

- 가. 공 고 일 : 2025. 3. 18. (화) ~ 2025. 3. 26. (수)
나. 접수기간 : 2025. 3. 18. (화) ~ 2025. 3. 26. (수)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원칙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가능
: 2025. 3. 26. (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라. 이메일 주소 : syj-ymca@hanmail.net (이메일 접수 시 접수확인 요망)
마. 우편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 2길 31
※ 우편접수전화 및 지원 및 자격문의
홍천군 청소년수련관 : 033-433-4351 / 인사관리 담당 송용주

VI.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붙임1, 붙임2.】 참조
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
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붙임3.】 참조
마.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붙임4.】 참조
바. 기타 경력사항 기재내용과 관련 증빙 자료는 차후에 요청.

VII. 기타사항

- 수련관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집일정 등 공고사항은 수련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지역연고자 및 근무지역 거주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채용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반영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 해야 합니다.)